

□ 지원항목

분 야		특징	세부 집행 항목 및 지원 사항
활동지 원형	지역사회 나눔활동지원	- 지역사회 학습 나눔 활동 실천 동아리 - 지역사회 문제 중심 토론과 성찰	- 강사비(1시간당 최대 40,000원) - 재료비 (지역사회 나눔 활동, 학습동아리 연계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)
	심화학습지원	- 초빙 강의 및 토론 중심 동아리	- 홍보비, 인쇄비
발굴육 성형	기관·단체	- 지역사회 학습 나눔 기관·단체 - 학습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	(학습동아리 신규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)

(사업)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

-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, 시상품, 단체복, 단체식비 등 소모성 경비
 - 강사 수당 지급 대상이 동아리 내 임원 및 회원일 경우
 - 식사비, 다과비, 여비(현금지급) 등의 현금성 지출 경비
 - 강사료 외 강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, 사례비, 접대비
- ※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.**

□ 사업비 지원원칙

- 영주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
 - 1개 평생학습동아리에 1개 사업 응모 원칙
 -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이중지원은 불가
 - 사교와 친목이 아닌 동아리의 활동 분야 및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학습동아리
- ※ 사업선정이 된 동아리는 추후 개인명의로 아닌 학습동아리명 으로 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가 있어야 함 (세무서 고유번호증 필수)**

□ 지원제외 동아리

-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
 - 타 기관·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교부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
 - 타 기관·단체의 강사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교부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
- 단체 및 시설(기관)의 내부 사업을 위한 학습동아리인 경우
- 특정기관의 영리 목적과 정치 및 종교활동을 하는 모임 및 동아리
- 대학교(원) 소속의 대학생(원)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
-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강사가 주체(리더)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경우
-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이외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학습동아리
- 기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